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16

발의연월일: 2021. 3. 8.

발 의 자:황운하·양정숙·김승원

민형배 · 최강욱 · 강민정

김회재 · 김영호 · 김홍걸

오영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원경찰의 임용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,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청원경찰은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. 한편, 「국가공무원법」은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보다 당연퇴직사유를 완화하여 정하고 있음. 구체적으로, 공무원은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퇴직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, 임용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보물죄·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당연퇴직되도록 하고 있음.

따라서 현행법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사유를 국가공무원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.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사유 중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

사유에 관한 부분은 "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법의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"된다고 하며, 동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(2017헌가26).

이에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단서를 신설하여,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,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수뢰, 성폭력범죄 및 직무와 관련 횡령 등의 죄를 범한 사람만 당연퇴직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기본권을 보호하 려는 것임(안 제10조의6). 법률 제 호
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6제1호 중 "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"를 "「국가공무 원법」 제69조제1호에 따른 당연퇴직사유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이 법 시행후의 행위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6(당연 퇴직) 청원경찰이	제10조의6(당연 퇴직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.	
1.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	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9조제1
<u>사유</u> 에 해당될 때	호에 따른 당연퇴직사유
2. · 3. (생 략)	2.•3. (현행과 같음)